

한국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 추정에 관한 연구: 여행자 휴대품 통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ptimal Cut-off Level of Simple Tax Rate
in Korea : Cases of traveler's customs clearance

김 희 권** Hee-Kwon Kim

김 희 호*** Hee-Ho Kim

목 차

I. 서론	IV. 한국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 추정
II. 여행자 휴대품의 FTA 협정관세와 문제점	V. 결론
III. 한국 간이세율의 산정구조와 문제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FTA관세협정이 확대되면서 일반 수입품은 무관세혜택을 받고 있지만, 국내 여행자의 휴대품은 원산지증명이 어렵고, FTA특혜관세 적용요건(거래당사자 요건, 원산지상품 요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에 FTA관세혜택을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서 FTA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추정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간이세율의 인하수준을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안으로 구분하여 그 가운데 여행

* 본 논문의 발전과 수정에 뛰어난 제언을 주신 두 분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남아있는 오류는 모두 저자들에게 있다. 이 논문은 경북대학교 대학원 FTA통상학과 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였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사무관, 제1저자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교신저자

자 후생과 세수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큰 적정 인하수준을 추정해보았다. 간이세율의 인하 방안은 첫째(1안), 관세율을 기본관세율과 실효관세율의 차이(7%)를 품목별로 인하할 경우, 둘째(2안), 관세율을 모든 품목에 실효관세율(2%)로 적용할 경우, 셋째(3안),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면제(0%)를 적용할 경우 간이세율의 수준이다.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간이세율의 인하로 나타나는 효과를 기준으로 가중평균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겼다. 가중치는 현재 관세청과 세관에서 통관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정하였다. 가중치를 고려한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은 실효관세율 수준인 2%로 인하하는 2안이 가장 효과가 컸으며, 그로 인해 우리나라 세수감소와 여행자 조세감소효과는 168억 원, 징세비용은 3.4억 원으로서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

<주제어> FTA관세, 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 소비자 후생

I. 서 론

2018년 현재 한국은 15건 52개국과 자유지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전체 교역액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¹⁾은 2015년도 43.4%, 2016년도 67.8%, 2017년도 68.2%로 확대되고 있다. FTA 체결국과 교역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업체의 일반 수입품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서 대부분 무관세(저세율)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거주 소비자의 해외여행휴대품(여행자 휴대품)은 원산지증명이 어렵고 FTA특혜관세 적용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FTA관세혜택을 보기 어렵다. FTA 시대에 국내소비자의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소비자의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간이세율의 문제점과 소비자 후생을 고려한 연구가 거의 없다. 특히,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FTA 활용률이 일반 수입물품에 비해 낮고 금액도 소액이어서 그동안 연구 분석에서 제외되어 왔다.

본 연구는 국내소비자의 해외여행에서도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행자 휴대품 과세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의 적정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간이세율의 인하수준을 세 가지 방안으로 구분하여 그 가운데 여행자 후생과 세수 효과가 가장 큰 적정인하수준을 추정해보았다. 간이세율의 인하 시나리오는 첫째(1안), 관세율을 기본관세율과 실효관세율의 차이(7%)를 품목별로 인하할 경우, 둘째(2안), 관세율을 모든 품목에 실효관세율(2%)로 적용할 경우, 셋째(3안),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면제(0%)를 적용

1) FTA 체결국 교역현황(관세청, 2018.3월, 관세행정 업무분야별 통계자료, p.97

할 경우 간이세율의 수준이다. 간이세율의 적정인하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간이세율의 인하로 나타나는 효과를 기준으로 가중평균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겼다. 가중치는 현재 관세청과 세관에서 통관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정하였다.

간이세율의 소비자 후생효과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와 관련한 연구보고서에서 정재호(2011)와 최봉현(2014)는 여행자물품 간이세율에 대한 적정수준을 분석하면서 국민소득의 수준에 따라 국가별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들 보고서는 공통적으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의 상향 조정 등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세율인하 효과와 관련된 연구로서 한영철(1986)은 관세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별 관세비용을 실증적으로 측정하였으며, 그와 함께 산업별 관세의 실효보호율도 비교·분석하였다. 김용대(2005)는 WTO 관세협상에서 관세인하 시나리오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실효보호율을 추정하고, 이것이 한국의 수출입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다르게 면세한도 초과물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의 적정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국내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 여행자의 간이세율의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둘째, 간이세율의 산정구조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세 가지 방안별로 추정해보고, 마지막으로 간이세율의 적정인하가 소비자 후생과 정부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의미는 우리나라 관세법과 FTA 협정문, 관세통계를 사용하여 간이세율의 적정인하수준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 동안 소외된 국내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비자측면의 관세정책 가이드를 제시하는데 있다.

II. 여행자 휴대품의 FTA 협정관세와 문제점

1. 여행자 휴대품의 통관현황과 FTA 협정관세

여행자 휴대품은 일시적으로 출, 입국하는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물품으로 통상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말한다.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여행자 휴대품은 정식 수입통관절차와 달리 간이 통관절차와 간이세율을 적용받아 통관하고 있다. <표 1>은 여행자 휴대품과 일반 수입화물

의 통관을 비교하고 있다.

〈표 1〉 여행자 휴대품과 일반 수입화물의 통관 비교

구 분	여행자 휴대품	일반 수입화물
수입신고방법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제출	수입신고서 제출
과세방법	부과고지	신고납부
세율적용	간이세율 (통상 20% 수준)	기본세율, 양허세율, 협정세율 등(세율적용 우선순위)
평가방법	구입가격 기준	구입가격에 운임, 보험료 포함
검사대상 선별	X-ray검색, APIS ²⁾ , 동태관찰 등	선별기준 C/S(Cargo Selectivity)

* [자료] : 관세청자료를 인용하여 연구자 작성

여행자 휴대품은 평균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되며, 자발적 신고서에 의존하지만, 일반 수입은 원산지 국가별로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수입신고서를 통해 부과된다. 〈표 2〉는 최근 5년간 국내에 입국한 여행자 휴대품 검사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여행자 휴대품 검사 현황

(단위 : 건, %)

년 도	입국자수	검사건수	검사율	적발건수	적발율
2013년	24,479,835	575,181	2.3	407,830	70.9
2014년	27,864,974	518,995	1.9	390,334	75.0
2015년	29,728,696	540,833	1.8	416,984	77.1
2016년	36,946,433	589,196	1.6	457,559	77.7
2017년	37,355,964	683,055	1.8	493,611	72.3

* [자료] : 관세청, 관세행정 업무분야별 통계자료(2018. 3월), p.80

2013년도 2.3%, 2014년도 1.9% 2015년도 1.8%, 2016년도 1.6%, 2017년도 1.8%로 낮은 검사율을 보이지만, 휴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건수의 약 70%를 적발하고 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과세현황은 〈표 3〉에서 나타나 있다. 여행자 휴대품 과세액은 2013년 524억 원, 2014년 517억 원, 2015년 446억 원, 2016년 448억 원, 2017년 482억 원으로 관세청 전체의 연간 징수액에서 여행자 통관 징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1% 미만으로 재정수입 비중은 작은 편이다.

2) APIS :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여행자사전정보확인제도

〈표 3〉 여행자 통관 과세현황

(단위 : 천 건, 억 원)

년 도	여행자 통관 징수액		관세청 징수액(b)	비중(%) (a/b)
	과세건수	징수금액(a)		
2013년	182	524	655,123	0.08
2014년	162	517	581,467	0.09
2015년	168	446	522,548	0.09
2016년	176	448	495,283	0.09
2017년	219	482	573,534	0.08

* [자료] : 여행자 통관 징수액-관세청, 관세행정 업무분야별 통계자료(2018. 3월), p.81
관세청 징수액-e-나라지표(www.index.go.kr), 관세청 소관 세수실적

여행자 휴대품이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고,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로 소명되어야 하고, 직접운송원칙 등 FTA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이 체결한 FTA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면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면제기준은 〈표 4〉와 같이 금액과 용도별로 상이하며, 대부분 미화 1,000달러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아세안 미화 200달러, 한-중국 미화 700달러, 한-베트남 미화 600달러이다. 한-인도 CEP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면제금액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국내 법령(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화 1,000달러 이하를 적용한다.

〈표 4〉 FTA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면제조건 비교

FTA(CEPA)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면제 예외
1. 한-칠레	상업적, 비상업적 수입 \$1,000이하	증명요건 회피 목적
2. 한-싱가포르	\$1,000이하	증명요건 회피 목적
3. 한-EFTA	개인소포, 여행자 수화물 \$1,000이하	상업적 수입 요건 미충족
4. 한-아세안	FOB \$200이하	증명요건 회피 목적
5. 한-인도	개인소포, 여행자 수화물	-

6. 한-EU	개인소포, 여행자 수화물 \$1,000이하	상업적 수입 요건 미충족
7. 한-페루	\$1,000이하	법 준수 회피 목적
8. 한-미국	\$1,000이하	법 준수 회피 목적 계획된 수입 일부
9. 한-터키	개인소포, 여행자 수화물 \$1,000이하	무역 수입 신고의 진실성 의심
10. 한-콜롬비아	\$1,000이하	요건회피 목적
11. 한-호주	\$1,000이하	요건회피 목적
12. 한-캐나다	\$1,000이하	요건회피 목적
13. 한-중국	\$700이하	원산지증명 회피 목적
14. 한-베트남	FOB \$600이하	법 준수 회피 목적 계획된 수입 일부
15. 한-뉴질랜드	\$1,000이하	원산지 신고서 요건 회피 목적

* [자료] : 관세청(2016), “알기쉬운 FTA 협정문 비교” pp.433-441 (요약)

또한 한-EFTA 및 한-EU FTA의 경우 미화 1,000달러 초과, 6,000유로 이하의 물품은 구매영수증에 다음과 같은 원산지 문안과 판매자 서명이 있는 기재되었을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이때, 신고서 문안과 서명은 수기로 작성이 가능하며, 인증수출자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원산지) preferential origin.”

(“이 서류(세관인증번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은 (원산지)의 특혜원산지상품임을 신고한다.”)

2. 여행자 휴대품의 FTA 활용률과 문제점

FTA 활용율은 특혜관세 대상품목의 수출(수입)액에서 실제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출(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정하고 있다. <표 6>은 한국의 FTA 활용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FTA 수출활용율은 2013년도 67.3%, 2014년도 69.0%, 2015년도 71.9%, 2016년도 72.2%, 2017년도 70.0%이며, FTA 수입활용율은 2013년도 69.3%, 2014년도 68.0%, 2015년도 70.2%, 2016년도 73.1%, 2017년도 74.0%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표 5〉 FTA 활용율 현황

(단위 :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FTA 수출활용율	67.3	69.0	71.9	72.2	70.0
FTA 수입활용율	69.3	68.0	70.2	73.1	74.0

* [자료] : 관세청, 관세행정 업무분야별 통계자료(2018. 3월), p.101

〈표 6〉은 여행자 휴대품의 FTA 협정세율 적용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 일반화물의 FTA 활용률에 비해서 아주 낮게 나타나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FTA 관세인하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 휴대품에 대한 FTA 활용율은 2013년도 1,372건, 2014년도 986건, 2015년도 483건, 2016년도 498건, 2017년도 461건이고, 여행자 휴대품 과세건수 대비 2013년 0.75%, 2014년 0.61%, 2015년 0.29%, 2016년 0.28%, 2017년 0.21%로 미미한 수준이다.

〈표 6〉 여행자 휴대품 협정세율 적용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여행자 휴대품 과세건수(a)	182,141	161,679	167,627	176,039	218,926
협정세율 적용 건수(b)	1,372	986	483	498	461
협정세율적용 비율(b/a)	0.75	0.61	0.29	0.28	0.21

* [자료] : 관세청(CDW)자료 발췌

〈표 7〉는 FTA 협정별 여행자 휴대품의 FTA 활용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EU FTA가 가장 많고, 한-싱가포르-인도-페루-콜롬비아-베트남 FTA는 전무하다. 또한 FTA 협정세율 적용에 따른 관세혜택을 과세가격에서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추산해 보면 2013년도 92백만 원, 2014년도 57백만 원, 2015년도 40백만 원, 2016년도 46백만 원, 2017년도 51백만 원으로 연간 5천만 원 미만이다.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이 많은 것은 다른 FTA 협정과는 달리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미화 1,000달러 초과 6,000유로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구매영수증에서 앞에서 보여준 원산지문안과 판매자 서명만으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7〉 여행자 휴대품 FTA 협정별 협정세율 적용 현황

(단위 : 건, 원)

FTA 협정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한-칠레	건수	-	1	5	2	2
	과세가격	-	141,386	879,434	218,531	152,597
한-EFTA	건수	1	-	2	1	-
	과세가격	903,115	-	1,128,144	71,551	-
한-아세안	건수	1	-	-	-	-
	과세가격	595,200	-	-	-	-
한-EU	건수	1,357	973	464	472	446
	과세가격	1,141,388,009	705,564,674	484,682,819	554,196,057	601,736,351
한-미국	건수	12	10	9	13	10
	과세가격	9,958,522	4,540,209	6,587,926	3,873,804	37,196,557
한-터키	건수	1	2	1	-	-
	과세가격	112,878	813,796	412,603	-	-
한-호주	건수	-	-	-	2	-
	과세가격	-	-	-	96,380	-
한-캐나다	건수	-	-	2	3	2
	과세가격	-	-	280,976	333,637	176,744
한-중국	건수	-	-	-	3	1
	과세가격	-	-	-	10,985,310	795,482
한-뉴질랜드	건수	-	-	-	2	-
	과세가격	-	-	-	434,263	-
합 계	건수	1,372	986	483	498	461
	과세가격	1,152,957,724	711,060,065	493,971,902	570,209,533	640,057,731
	FTA 혜택 (과세가격×8%)	92,236,617	56,884,805	39,517,752	45,616,762	51,204,618

* [자료] : 관세청(CDW) 발췌

한편, 2017년 일반 수입물품의 FTA 수입활용률은 74%이었다. WTO 양허세율을 적용할 경우 원산지증명이 요구되는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수입물품은 FTA 협정세율, WTO 양허세율, 환급특례법 환급 등 여러 방법으로 대부분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원산지가 FTA 협정국이어야 하고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판매되어 직접 운송되는 물품이며, 수입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표 8>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표 8> 여행자 휴대품 FTA 협정세율 적용 관련 질의응답(Q&A) 사례

Q : US\$ 1,500의 가방을 구매한 경우 원산지 신고서 없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총 구입가격이 US\$1,000이하인 경우 US\$60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하며, 총 구입가격이 US\$1,000을 초과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야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 EU국가에서 구매한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A :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이 협정당사국의 원산지제품인지와 물품구매가격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매영수증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만 한-EU FTA 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 협정당사국에서 구매한 중국제품(제3국 제품)도 관세혜택이 가능한가요?
A : 협정 당사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였더라도 원산지가 EU국이 아닌 물품은 FTA 적용이 불가합니다. 휴대품 검사결과 제3국으로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는 물품은 협정관세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행자의 개인수하물 중 원산지가 중국으로 표시된 제품은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 EU 여행 후 환승 시 제3국(홍콩, 두바이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물품도 “FTA 소액물품”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 FTA 협정은 협정당사국간 거래이며, 협정당사국의 수출자를 요건으로 하므로 협정국이 원산지인 물품이더라도 협정당사국이 아닌 국가에서 구입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휴대품에 대하여도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거래당사자 부적격/거래요건 미충족)
Q : EU국가가 아닌 제3국 홍콩의 면세점(홍콩소매 Duty Free Shop)에서 협정당사국인 원산지제품을 구매하여 온 경우 FTA 소액물품의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A :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EU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영역원칙(Principle of Territoriality) 및 직접운송 요건(Direct Transport)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원산지 제품이라 해도 협정대상국가가 아닌 홍콩에서 구매한 제품은 영역원칙 및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는 거래이므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 이탈리아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 중 원산지가 중국인 경우와 원산지가 미표시된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A : 한-EU FTA 협정 체결국인 제품(이탈리아産)에 한해 소액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 없이 FTA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록 물품을 협정 당사국에서 구매하였더라도 협정체결국의 원산지가 아닌 물품은 FTA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원산지가 중국으로 표시된 제품은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원산지 미표시로 원산지확인이 곤란한 경우 영수증상 구매한 주소가 EU 당사국이면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

* [자료] : 관세청 지식경영포털(<http://ckp.customs.go.kr>) 질의응답(Q&A)

여행자 휴대품 FTA 협정세율 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 여행자 휴대품은 일반 수입 물품과 달리 여행자 개인이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면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면제금액이 미화 1,000달러 이하로 소액이다. 셋째, FTA 특혜관세 적용요건 충족이 어렵다. 예를 들어 국내 면세점이나 홍콩에서 구매한 EU 원산지물품은 거래당사자 요건³⁾, 원산지상품 요건⁴⁾, 직접운송 요건⁵⁾ 미충족으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거래당사자 요건 : 거래물품의 수출자, 생산자, 그리고 수입자는 모두 FTA 협정 체결 당사국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발급에 권한이 있고 검증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어야 함

III. 한국 간이세율의 산정구조와 문제점

1. 간이세율의 산정 구조

여기에서는 현행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하는 간이세율을 산정할 때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세율은 여행자의 편의 제고 및 신속통관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행자 휴대품·우편물 등의 수입 시 관세와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를 합산한 세율을 기초로 산정한 통합세율을 말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과 세율은 <표 9>와 같다.

<표 9> 간이세율표

품 명	세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	55 92만 6천원 + 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2. 수리선박(관세가 무세인 것을 제외한다)	2.5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나. 가죽제 또는 코모지선레터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다. 녹용	30 25 32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용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나.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	20

* [자료] :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관련 별표 2

- 4) 원산지상품 요건 : FTA 협정 체결 당사국에서 생산되고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이어야 함. 즉 원산지가 협정 체결 당사국으로 인정되는 원산지상품이어야 함
5) 직접운송 원칙 :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어야 함

현행 간이세율은 개별소비세 부과물품과 기본관세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2.5%에서 55%까지 8단계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는 투전기보석·고급시계 등의 세율은 20~55%, 수리선박(관세가 무세인 것을 제외)의 세율은 2.5%, 기본관세율 10% 이상인 휴대품은 녹용 32%, 모피제품 30%, 의류 등 25%, 주류,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담배 등을 제외한 기타 물품의 세율 20%이며, 과세가격은 실거래가격(수리선박은 수리를 위하여 지급한 외화가격)이다.

현행 품목별 간이세율 산정에 포함된 세목과 세율 및 그 세액계산 내역을 보면 <표 10>과 같다. 간이세율표 1호 가목(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의 물품은 기본관세율 8%, 개별소비세율 20%, 교육세율 30%, 농어촌특별세율 10%, 부가가치세율 10%를 합산하여 간이세율을 55%로 산정하였다. 1호 나목(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의 물품은 기준가격 5,000,000원(관세전 가격 4,630,000원) 초과가격에는 기본관세율 8%, 개별소비세율 20%, 교육세율 30%, 농어촌특별세율 10%, 부가가치세율 10%를 합산하여 간이세율 50%로 산정하고 기준가격 이하가격은 개별소비세 비과세대상이므로 기본관세율 8%와 부가가치세율 10%를 합산하여 간이세율 20%로 산정하였다. 1호 다목(고급 시계, 고급 가방)의 물품은 기준가격 2,000,000원(관세전 가격 1,852,000원) 초과가격에는 기본관세율 8%, 개별소비세율 20%, 교육세율 30%, 농어촌특별세율 10%, 부가가치세율 10%를 합산하여 간이세율 50%로 산정하고 기준가격 이하가격은 개별소비세 비과세대상이므로 기본관세율 8%와 부가가치세율 10%를 합산하여 간이세율 20%로 산정하였다. 3호 가목(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의 물품은 기본관세율 16%, 부가가치세율 10%를 합산하여 간이세율 30%로 산정하였다. 3호 나목(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의 물품은 기본관세율 13%, 부가가치세율 10%를 합산하여 간이세율 25%로 산정하였다. 3호 다(녹용)의 물품은 기본관세율 20%, 부가가치세율 10%를 합산하여 간이세율 32%로 산정하였다. 4호 기타 물품은 기본관세율 8%, 부가가치세율 10%를 합산하여 간이세율 20%로 산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간이세율 산정구조를 보면 간이세율의 기초는 물품별 기본관세율이며, 기본관세율과 내국세율을 합산하여 책정하고 있다.

〈표 10〉 간이세율표 품목별 간이세율 산정 (물품가격 100원)

(단위 : 원)

구 분	관 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가치세	합산세액	간이세율	
간이세율표 1호 가목								
세 액	8	21.6	6.48	2.16	13.82	52.06	55%	
산정내역	100×8%	(100+8)×20%	21.6×30%	21.6×10%	(100+8+21.6+6.48+2.16)×10%	-	-	
간이세율표 1호 나목								
기준 가격 초과	세액	8	21.6	6.48	2.16	13.82	52.06	50%
	산정 내역	100×8%	(100+8)×20%	21.6×30%	21.6×10%	(100+8+21.6+6.48+2.16)×10%	-	-
기준 가격 이하	세액	8	-	-	-	10.8	18.8	20% 926,000
	산정 내역	100×8%	-	-	-	(100+8)×10%	-	(4,630,000) ×20%
간이세율표 1호 다목								
기준 가격 초과	세액	8	21.6	6.48	2.16	13.82	52.06	50%
	산정 내역	100×8%	(100+8)×20%	21.6×30%	21.6×10%	(100+8+21.6+6.48+2.16)×10%	-	-
기준 가격 이하	세액	8	-	-	-	10.8	18.8	20% 370,400
	산정 내역	100×8%	-	-	-	(100+8)×10%	-	(1,852,000) ×20%
간이세율표 3호 가목								
세 액	16	-	-	-	11.6	27.6	30%	
산정내역	100×16%	-	-	-	(100+16)×10%	-	-	
간이세율표 3호 나목								
세 액	13	-	-	-	11.3	24.3	25%	
산정내역	100×13%	-	-	-	(100+13)×10%	-	-	
간이세율표 3호 다목								
세 액	20	-	-	-	12	32	32%	
산정내역	100×20%	-	-	-	(100+20)×10%	-	-	
간이세율표 4호								
세 액	8	-	-	-	10.8	18.8	20%	
산정내역	100×8%	-	-	-	(100+8)×10%	-	-	

* [자료] : 연구자 작성

2. 현행 간이세율의 산정의 문제점

간이세율 적용물품을 일반수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관세율은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기본세율보다 낮은 WTO 양허세율이나 FTA 협정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여행자 휴대품은 기본관세율 기초로 산정한 간이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여행자가 불리한 구조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물품가격 100원의 오락용품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통관하는 경우 <표 11>과 같이 여행자는 55원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반면, 일반 수입하는 경우 한-미 FTA 협정세율 0% 관세율을 적용하여 총 40.8원을 부담한다.

<표 11> 오락용품 세액 비교 (물품가격 100원)

구 분	관 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가치세	합산 세액	간이세율 (액)
여행자 휴대품	8	21.6	6.48	2.16	13.82	52.06	55%(55)
일반 수입물품	0	20	6	2	12.8	40.8	

* [자료] : 연구자 작성

또한 여행자는 간이세율 산정방법에 따라 합산한 세액은 52.06원임에도 실제 55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여행자 편의와 신속통관 등 간이세율 적용의 혜택에 비하여 부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FTA의 확대로 <표 12>와 같이 실효관세율이 1%대로 낮아진 시점에서 경제상황에 국내소비자의 후생증대 측면에서 간이세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12> 연도별 관세율 추이

(단위 : %)

구 분	2003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기본관세율 ⁶⁾	8.6	8.7	8.7	8.7	8.7	8.7
실행관세율 ⁷⁾	5.04	2.84	2.76	2.89	2.67	2.36
실효관세율 ⁸⁾	3.18	1.61	1.56	1.71	2.10	1.56

* [자료] : 관세청, 관세행정 업무분야별 통계자료(2018. 3월), p10

6) 세목에 따른 세율 총 합계를 세목수로 나누어 산술평균한 값 [$\sum(\text{세목} \times \text{세율}) / \text{전체품목수}$]

7) 품목별 수입액 차이 및 실제 적용세율이 감안된 평균 세율 [$\text{총징수액} / \text{총수입액}$]

8) 관세환급 후 순징수액 기준 평균세율 [$\text{순징수액}(\text{총징수액} - \text{환급액}) / \text{총수입액}$]

IV. 한국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 추정

1. 간이세율의 인하 조정방안

우리나라 간이세율의 산정구조를 보면 간이세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관세(율)와 내국세(율)이다. 내국세(율)은 FTA 확대 등 무역자유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관세(율)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표 13>은 가장 크게 간이세율에 영향을 주는 관세율의 인하에 대한 세 가지 조정 방안과 그에 따른 간이세율 인하 수준을 분석해 보았다. 첫 번째 안(1안)은 관세율을 품목별 7% 인하할 경우 간이세율, 두 번째 안(2안)은 관세율을 모든 품목에 2%로 적용할 경우 간이세율, 세 번째 안(3안)은 관세율을 모든 품목에 대해 0%로 적용할 경우 간이세율의 수준을 추정하였다.

<표 13> 관세율 조정 방안

관세율 조정 방안	근 거
(1안) 관세율 품목별 7% 인하 적용	2017년 기준 기본관세율(8.7%)과 실효관세율(1.56%)의 차이(7.14%) 감안
(2안) 관세율 모든 품목 2% 적용	2017년 기준 실행관세율(2.36%)과 실효관세율(1.56%) 감안
(3안) 관세율 모든 품목 0% 적용	향후 FTA 등으로 무역자유화가 진전될 경우 실효관세율은 0%로 수렴됨을 감안

* [자료] : 연구자 작성

첫 번째 방안(1안)에서 품목별 세율을 7% 일괄 인하하는 근거는 현재 FTA 체결로 인해 한국의 실효관세율이 2017년 기준과세율(8.7%)보다 훨씬 낮은 1.56%이며, 기본관세율(8.7%)과 실효관세율(1.56%)의 차이(7.14%) 감안하여, 간이세율의 7%인하를 산정하였다.

두 번째 방안(2안)은 관세율을 모든 품목에 2%로 적용할 때 간이세율이다. 이 근거는 실제 FTA 협정으로 2017년 기준 실행관세율(2.36%)과 실효관세율(1.56%)의 평균 세율인 2% 세율을 공통적으로 적용할 때 간이세율의 적정수준을 추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안(3안)은 관세율을 모든 품목에 0%로 적용할 때 간이세율이다. 이 근거는 FTA 확대에 의해 자유무역이 실현되면 관세가 없어지는 혜택을 가지게 되며, 이때 간이세율의 적정수준을 추정하는 것이다.

<표 14>는 세 가지 방안에 따라 간이세율의 인하효과를 산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안의 경우 간이세율은 품목별로 최소 7%에서 최대 12% 인하되고, 2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이 품목별로 최소 6%에서 최대 19% 인하되며, 3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이 품목별로 최소 10%에서 최대 22%까지 인하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세율을 2%(2안) 또는 0%(3안)와 같이 단일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의 간이세율은 각각 13% 또는 10%로 단일한 세율체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단순한 세율체계는 납세자나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여행자의 편의 제고와 신속통관이라는 간이통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4〉 관세율 조정 방안별 간이세율

구분	품명	조정 간이세율	
		관세율	세율(%)
1안	1호 가목	1	43 (산정값 42.21)
	나목	1	55만 5천 6백원 + 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3
	다목	1	22만 2천 2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3
	3호 가목	9	20 (산정값 19.9)
	나목	6	17 (산정값 16.6)
	다목	13	25 (산정값 24.3)
	4호	1	12 (산정값 11.1)
2안	1호 가목	2	44 (산정값 43.62)
	나목	2	60만 1천 9백원 + 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4
	다목	2	24만 8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4
	3호 가목	2	13 (산정값 12.2)
	나목	2	13 (산정값 12.2)
	다목	2	13 (산정값 12.2)
	4호	2	13 (산정값 12.2)
3안	1호 가목	0	41 (산정값 40.8)
	나목	0	46만 3천원 + 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1
	다목	0	18만 5천 2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1
	3호 가목	0	10 (산정값 10)
	나목	0	10 (산정값 10)
	다목	0	10 (산정값 10)
	4호	0	10 (산정값 10)

* [자료] : 연구자 작성

2.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 추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간이세율의 인하수준을 세 가지 방안으로 구분하여 그 가운데 여행자 후생과 세수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큰 적정 인하수준을 추정해보았다.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간이세율의 인하로 나타나는 효과를 기준으로 가중평균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겼다. 가중치는 현재 관세청과 세관에서 통관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정하였다. 간이세율 인하로 인한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로서 여행자 조세부담 감소로 인한 후생증가 효과와 휴대품 통관행정 효율화 효과가 있으며, 부정적인 효과로서 세수감소 효과, 징세비용 증가효과, 여행수지 악화 등이다. (관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한영철(1986) “관세의 경제적 효과분석” 논문 참조).

먼저 간이세율의 인하효과 중에서 여행자 조세부담 감소와 같이 긍정적인 요소는 효과가 큰 순서로 3점부터 1점까지 부여하였으며, 세수감소, 여행수지 악화, 징세비용 증가와 같이 부정적인 요소는 그 효과가 작은 순서로 3점부터 1점까지 부여하였다. 세수감소 효과가 작은 순서는 간이세율 인하 폭이 작은 2안, 1안, 3안의 순서로 3점, 2점, 1점의 점수를 매길 수 있으며, 여행자 세부담 감소 효과는 그 효과가 큰 3안, 1안, 2안 순서로 점수를 매겼다. 또한, 여행자수지 악화 효과가 작은 순서는 간이세율 인하 폭이 작아 해외소비로 인한 외화유출이 작은 2안, 1안, 3안 순서로 점수를 매겼다. 간이세율 인하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징세비용은 증가하게 되는데, 징세비용 증가 효과가 작은 순서는 세수감소가 작은 2안, 1안, 3안 순서로 각각 3점, 2점, 1점 부여하며, 마지막으로 휴대품 통관행정 변화 효과는 세수나 외화유출, 징세비용과 달리 정책적인 측면의 효과로서 각 안 모두 동일하게 2점을 부여하였다.

〈표 15〉 간이세율 인하 시나리오별 인하효과 점수

구 분	1안	2안	3안
세수감소	2	3	1
여행자 세부담 감소	2	1	3
여행자수지 악화(외화유출)	2	3	1
징세비용 증가	2	3	1
휴대품 통관행정 효율화	2	2	2
합 계	10	12	8

* [자료] : 연구자 작성

〈표 15〉는 간이세율 인하가 가져오는 효과를 순서대로 점수를 매겨서 합산한 값이며, 간이세율의 인하로 인한 효과점수이다. 간이세율의 인하효과는 세 가지 방안 중에서 2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간이세율의 인하효과에 대해 국민후생에 미치는 중요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다시 점수를 산정하였다. 국민후생에 미치는 중요도는 실제 관세청과 세관에서 여행자 휴대품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통관직원 15명을 랜덤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간이세율 인하의 효과에 대한 중요도 순으로 5점부터 1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표 16〉에서 간이세율 인하 효과의 중요도는 세수감소 3.87점, 여행자 세부담 감소 3.47점, 여행자수지 악화 3.00점, 휴대품 통관행정 효율화 2.93점, 징세비용 증가 1.60점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간이세율 인하효과의 중요도는 조사범위·대상·방법이 다를 경우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표 16〉 간이세율 인하효과의 중요도 (통관업무 실무자 자료조사)

구 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합계	평균
세수감소	3	4	5	5	4	3	4	4	2	5	4	5	3	4	3	58	3.87
여행자 세부담 감소	4	5	3	3	5	4	3	5	2	4	1	2	5	2	4	52	3.47
여행자수지 악화(외화유출)	2	2	4	2	2	5	2	1	5	3	5	3	2	5	2	45	3.00
징세비용 증가	1	1	2	1	2	2	1	3	1	1	3	1	1	3	1	24	1.60
휴대품 통관행정 효율화	5	3	1	4	1	1	5	2	4	2	2	4	4	1	5	44	2.93

* [자료] : 연구자 작성

마지막으로 간이세율의 인하효과에 가중치를 곱해서 가중평균 인하효과를 다시 산정하였다. 〈표 17〉은 간이세율의 가중평균 인하효과를 나타내며, 2안이 34.74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간이세율 인하 시나리오별 중요도 반영 인하효과 점수

구 분	1안	2안	3안
세수감소	7.74 (2×3.87)	11.61 (3×3.87)	3.87 (1×3.87)
여행자 세부담 감소	6.94 (2×3.47)	3.47 (1×3.47)	10.41 (3×3.47)
여행자수지 악화(외화유출)	6.00 (2×3.00)	9.00 (3×3.00)	3.00 (1×3.00)
징세비용 증가	3.20 (2×1.60)	4.80 (3×1.60)	1.60 (1×1.60)
휴대품 통관행정 효율화	5.86 (2×2.93)	5.86 (2×2.93)	5.86 (2×2.93)
합 계	29.74	34.74	24.74

* [자료] : 연구자 작성

요약하면, 2안에 따르는 간이세율의 인하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간이세율을 산정하는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실효관세율인 2%으로 낮추는 시나리오이다. 2017년 기준 실행관세율(2.36%)과 실효관세율(1.56%)이 평균적으로 2%이며, 한국과 교역규모가 큰 중국, 아세안, EU의 실행관세율이 각 각 3.2%⁹⁾, 1.4%, 1.7%로 평균 2%대 인점을 고려할 때 최적 간이세율의 인하수준으로서 2안이 합리적인 수준이다.

3. 간이세율의 인하 효과

간이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국가 세수가 감소하게 되고, 외국물품 구매에 보다 많이 지출하게 되므로 외화 유출과 여행자 수지 악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반면 해외여행자는 간이세율 인하로 세수가 감소되는 만큼의 세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또한 세수감소에 따라 징수비용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간이세율 인하에 따라 여행자 통관행정도 세수징수의 중요도가 낮아짐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세수감소와 여행자 세부담 감소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간이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 추정을 위해 2017년도 여행자 휴대품 세수 482억 원을 기준으로 간이세율 20% 품목의 경우로 단순화하여 세수감소 효과를 산정하였다. 관세율 조정 시나리오별로 세수감소 효과는 〈표 18〉과 같다.

9) 실행관세율 3.2%로 다른 협정에 비해 높으나, 2015.12.20. 발효된 한-중 FTA의 상품 양허는 단계적 철폐(즉시, 5년, 10년, 15년, 20년)로 향후(매년마다)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

〈표 18〉 간이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효과 추정

관세율 조정 방안	인하 後 간이세율	세수액	세수 감소액
(1안) 관세율 7% 인하 적용 (1% 적용)	12% (관세1%+부가세10.1%)	289.2억원 [(482억×12%)÷20%]	192.8억원 (482억-289.2억)
(2안) 관세율 2% 적용	13% (관세2%+부가세10.2%)	313.3억원 [(482억×13%)÷20%]	168.7억원 (482억-313.3억)
(3안) 관세율 0% 적용	10% (관세0%+부가세10%)	241억원 [(482억×10%)÷20%]	241억원 (482억-241억)

* [자료] : 연구자 작성

세수감소는 여행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므로 여행자의 세부담 감소는 세수감소 금액과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는 비록 여행자 개개인에게는 소액이지만 수많은 여행자에게 무차별적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있다. 해외여행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상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진신고 비율을 높이는 정책 수단을 강구한다면 동태적으로는 간이세율을 인하해도 여행자 휴대품의 세수는 감소폭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효과는 간이세율의 인하가 외화 유출 및 여행자 수지를 악화시키는 정도에 대한 추정이다. 간이세율 인하효과는 외화 유출 및 여행자 수지 악화로 부정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상쇄되거나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 첫째, 내국인의 국내면세점 구매한도(미화 3,000달러)와 여행자 면세한도(미화 600달러)가 정해져 있고, 관세청에서 2018년 4월부터 여행자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과세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물품을 무한정으로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국내 면세점에서 출국 시 구매한 물품과 항공기 내에서 구매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외화 유출과 여행자 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셋째,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상태이고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여행 활성화,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적정수준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 것이 환율하락 방지와 수출품 가격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효과는 징세비용의 증가와 휴대품 통관행정의 효율화에 대한 효과추정이다. 국세청 자료¹⁰⁾에 의하면 2015년 기준 100원당 국세징세비용¹¹⁾은 0.71원이다. 간이세율 인하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되므로 징세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국세징수비용을 적용하여 산출할 때 2017년 여행자 휴대품 징세비용은 약 3.4억 원((482억 원×0.71원)÷100원)이며, 간이세율을 인하해도 징세를 위한 지출비용은 변함이 없는 반면 세수는 줄

10) 국세청 블로그(‘아름다운 稅상’)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 p.4

11) 100원당 국세징세비용 : 국세청 지출비용(결산기준) ÷ 국세수입 × 100

어떻게 되므로 징세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한편, 여행자 휴대품 통관의 목적을 크게 보면 첫째, 면세 초과물품 과세를 통한 세수 징수, 둘째, 마약류, 총포도검류, 불법식의약품 등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차단이다. 간이세율의 적정인하를 통해 여행자 자진신고제를 활용하여 신속통관과 효율적인 관세행정을 구현하고, 여행자 휴대품 검사 등에 투입하는 인력과 시간 등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V. 결 론

최근 우리나라의 FTA 관세협정이 확대되면서 기업체의 일반 수입품은 대부분 무관세(저세율)혜택을 받고 있지만, 국내소비자의 여행자 휴대품은 원산지증명이 어렵고, FTA 특혜관세 적용요건(거래당사자 요건, 원산지상품 요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에 FTA 관세혜택을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7년 기준 일반 수입화물의 FTA 활용률은 74%인데 반해, 휴대품의 FTA 활용률은 0.21%로 미미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국내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서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추정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간이세율의 인하수준을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안으로 구분하여 그 가운데 가장 여행자 후생과 세수증대 측면에서 효과가 큰 적정 인하수준을 선택하였다. 간이세율의 인하 방안은 첫째(1안), 관세율을 품목별 7% 인하할 경우 간이세율, 둘째(2안), 관세율을 모든 품목에 2%로 적용할 경우 간이세율, 셋째(3안), 관세율을 모든 품목에 대해 0%로 적용할 경우 간이세율의 수준 등이다.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간이세율의 인하로 나타나는 5가지 효과를 기준으로 가중평균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겼다. 간이세율 인하효과는 여행자 세부담 감소효과와 휴대품 통관행정 효율화 효과, 세수감소효과, 징세비용증가효과, 여행수지 악화로 구분되며, 가중치는 현재 관세청과 세관에서 통관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정하였다. 간이세율의 인하효과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한 결과, 간이세율 인하효과의 중요도 가중치는 세수감소효과, 여행자 조세부담 감소, 여행수지 악화, 휴대품 통관행정 효율화, 징세비용 증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적용해서 산정한 간이세율의 적정인하 수준은 2안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세율을 실효관세율 수준인 2%로 인하하는 2안

은 2017년 기준 실행관세율(2.36%)과 실효관세율(1.56%)의 평균값인 2%에 유사하며, 중국, 아세안, EU의 실행관세율이 평균 2%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적정수준이다.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2%로 적용하면 우리나라 세수감소는 168억 원 감소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여행자 세부담 감소로 후생이 증가하며, 100원당 0.71원의 국세징세비용을 고려하면 징세비용은 3.4억 원으로서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해외직구물품이 탁송품이나 우편물 형태로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만 간이세율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를 간이세율 적용대상 전체 물품으로 확대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과제는 미래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논문 및 연구보고서〉

- 김용대(2005),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관세인하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박사학위 논문(2005.6월), pp.48-130
- 정재호(2011), “여행자소액물품 및 간이세율, 특송물품 목록통관기준 적정수준 연구”, 관세청 제출(2011.9월) 정책연구보고서, pp.1-122
- 최봉현(2014),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및 제도개선방안”, 기획재정부 제출(2014.8월) 정책연구보고서, pp.1-64
- 한영철(1986), “관세의 경제적 효과분석”, 석사학위 논문(1986.12월), pp.20-84

〈단행본 및 발간자료〉

- 관세청(2018), “관세행정 업무분야별 통계자료(2018.3월판)”, p.10, p.97, p.79, p.80, p.101, p.102
- 관세청(2016), “알기쉬운 FTA 협정문 비교”, 디자인아람, pp.433-441
- 관세청(2018), “한눈에 보는 2018년 상반기 FTA 활용지도”, p.5
- 손병해(2014), “FTA 경제학”, 경북대학교출판부, p.15
- 이영달(2016), “FTA 협정 및 법령해설”, 세인북스, p.94, p.111, p.113

〈웹사이트〉

- ① 관세청 지식경영포털시스템 질의응답(Q&A) 사례, 간이세율, 여행자 휴대품 FTA 협정 관세 <http://ckp.customs.go.kr> (2018.4.16. 검색)
- ② 관세청 홈페이지([www. 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관세행정안내_여행자 휴대품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066&layoutMenuNo=55 (2018.4.16. 검색)
- ③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국제수지 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022Y013&vw_cd=MT_ZTITLE&list_id=301_B_B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18.5.4. 검색)
- ④ 국세청 블로그('아름다운 稅상')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 p4 <http://blog.naver.com/ntscafe/220648197583> (2018.5.4. 검색)
- ⑤ e-나라지표(www.index.go.kr), 관세청 소관 세수실적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34 (2018.4.16. 검색)

A Study on the Optimal Cut-off Level of Simple Tax Rate in Korea: Cases of traveler's customs clearance

Hee-Kwon Kim

Hee-Ho Kim

Abstract

Tariff reduction from FTAs are applied to imported goods, but not to traveler's goods. There are difficulties in meeting the FTA's conditions for free tariff application, such as origin of goods and direct transport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optimal cut-off level of a simple tax rate applied to traveler's goods with respect to traveler's welfare and government tax revenue. Among three different scenarios of simple tax reductions by ordering its weighted magnitude of effects, the optimal tariff was found to be 2% applied to all goods. The effects of a 2% reduction of simple tax rate would increase traveler's welfare by 16.8 billion won and reduce tax revenue by only 0.34 billion won.

〈Key Words〉 Traveler's baggage goods, Simple tax rate, Welfare of traveler

